

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한 통·리·반을 분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개 통·리 증설(안 별표 2)

- 통·리 : 691개 통·리(통 491, 리 200)

⇒ 693개 통·리(통 491, 리 202)

- 고아읍(증2개리) : 문성레이크자이 신축(문성10리 신설)

문성태완노블리안 신축(문성11리 신설)

나. 28개반 증설(안 별표 2)

- 반 : 4,997개반 ⇒ 5,025개반(28개반 증가)

- 고아읍(증28) : 문성레이크자이 신축(문성10리 20개반)

문성태완노블리안 신축(문성11리 8개반)

다. 신축건물 지번 변경 및 오류 정정 (안 별표 9)

- 송정동 : 3통 신축 아파트 지번 변경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문성9리란 다음에 문성10리란부터 문성11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문성10리	1	586 문성레이크자이 101동 101호~2802호
	2	586 문성레이크자이 101동 103호~2904호
	3	586 문성레이크자이 101동 205호~2905호
	4	586 문성레이크자이 102동 101호~2502호
	5	586 문성레이크자이 102동 103호~2504호
	6	586 문성레이크자이 103동 201호~2902호
	7	586 문성레이크자이 103동 103호~2804호
	8	586 문성레이크자이 104동 201호~2902호
	9	586 문성레이크자이 104동 103호~2804호
	10	586 문성레이크자이 105동 201호~2902호
	11	586 문성레이크자이 105동 203호~2804호
	12	586 문성레이크자이 106동 201호~2402호
	13	586 문성레이크자이 106동 103호~2403호
	14	586 문성레이크자이 106동 104호~2805호
	15	586 문성레이크자이 107동 101호~2902호
	16	586 문성레이크자이 107동 203호~2904호
	17	586 문성레이크자이 107동 105호~2905호
	18	586 문성레이크자이 108동 101호~2602호
	19	586 문성레이크자이 108동 203호~2504호
	20	586 문성레이크자이 108동 105호~2505호

문성11리	1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1동 201호~2202호
	2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1동 203호~2204호
	3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2동 201호~2702호
	4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2동 203호~2704호
	5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3동 201호~1602호
	6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3동 203호~1604호
	7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4동 201호~2102호
	8	598 문성태완노블리안 104동 203호~2104호

별표 9의 3통 1반란부터 11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통	1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1동 101호~2001호, 202호~2002호, 상가동
	2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1동 103호~2003호, 404호~2004호, 405호~2005호
	3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2동 101호~1101호, 202호~2002호, 203호~2003호, 104호~1904호
	4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2동 105호~1905호, 106호~1906호
	5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3동 301호~1801호, 302호~1902호, 303호~2003호, 304호~2004호, 상가동
	6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4동 201호~1901호, 202호~1902호
	7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4동 103호~1003호, 104호~1004호, 105호~1505호
	8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4동 106호~1506호, 107호~1507호
	9	송정동 529번지 힐스테이트송정1단지 105동 201호~1801호, 202호~1802호, 203호~1803호, 204호~1404호
	10	송정동 531번지 힐스테이트송정2단지 201동 101호~1401호, 102호~1502호, 103호~903호, 상가동
	11	송정동 531번지 힐스테이트송정2단지 202동 101호~1601호, 102호~1702호, 103호~1103호, 104호~1104호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김 응 종
	담 당 자	김 재 원 (480-6767)